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공포 제2026-5호(개정 2026. 10.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은 교수업적평가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영역 구분) 교수업적평가 영역은 교육영역, 산학협력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제3조(평가영역별 점수배분) 규정 제2조에서 정한 평가영역별 점수배분은 <표 1>과 같으며 교육영역 170점, 산학협력영역 120점, 연구영역 110점, 봉사영역 100점으로 하여 4개 영역의 점수합계는 500점으로 하며, 각 영역별 점수는 해당 영역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가산점은 4개 영역의 점수합계와 별도로 가산하고, 특별감점은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개정 2020.12.22.), (개정 2022.1.1.), (개정 2022.2.17.), (개정 2023.5.30.), (개정 2024.12. 1.), (개정 2026.10.15.)

<표 1> 교수업적평가 종합표 (개정 2024.12. 1.), (개정 2026.10.15.)

영역	부 문	항 목	상한점수	평가단위	평가부서
교육	강의	강의시수	-5~10	개별	교무처
		주당강의일수	-5	개별	교무처
		강의계획서 및 성적	-5	개별	교무처
		휴보강	-5	개별	교무처
		강의평가	40	개별	교무처
		성적정정	-5	개별	교무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혁신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6	개별	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수업 운영규정·저작권 위반, 운영보고서 미제출 감점	-8	개별	원격교육지원센터
		교수 역량 향상프로그램 참여 및 교내 교육프로그램 지도	10	개별	관련 부서
	학생지도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25	개별	학생상담센터
		교과외 학생지도	10	개별	학생지원처
		학생성공 지도	10	개별	관련 부서
		재학생 등록유지율	35	집단	교무처
		신입생 충원율	35	집단	입학처
	계		170		
산학협력	산학협력 연구	산관학·국비과제 보고서(관학·산학연구보고서, 국비사업 계획·성과보고서)	20	개별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기술실적(특허·신기술인증·기술이전 통합)	10	개별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교육 및 창업	산학교육·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20	개별	산학협력처
		현장실습지도	14	개별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교육·지도(교원창업·경진대회·동아리·학교기업 통합)	10	개별	취·창업지원센터
		캡스톤·PBL 지도	9	개별	교무처·산학협력처
	국고지원사업 연계	G1 국고지원사업 강의·운영	12	개별	산학협력단·교무처
		G2 국고지원사업 개발	15	개별	산학협력단
		G3 국고지원사업 협력	15	개별	산학협력단

영역	부 문	항 목	상한점수	평가단위	평가부서
		G4 국고지원사업 운영 책임	20	개별	산학협력단
	취업	학과 취업률(집단)	33	집단	취·창업지원센터
		지도학생 취업률(개인)	20	개별	취·창업지원센터
		학생취업지도(행사·프로그램)	15	개별	취·창업지원센터
		지역정주 취업 가산	10	개별	취·창업지원센터
	산업체 및 지역연계	산학협력협약(신규 체결·협약업체 실질운영)	20	개별	산학협력처
		지역연계(지산학관민연 협약 3점·실질사업 7점)	20	개별	산학협력처
	계		120		
연구	연구 및 창작활동	논 문	110	개별	교무처
		저 서		개별	
		학술발표		개별	
		문학·예체능		개별	
	계		110		
봉사 및 기타	교내봉사		50	개별	관련 부서
	교외봉사		20	개별	교무처
	학사참여도	대학행사	20	개별	교무처
		학과행사	10	개별	학과장
	계		100		
합 계			500		

※ 각 영역의 항목별 상한점수 합계는 영역 상한을 초과할 수 있으며, 영역별 취득점수는 영역 상한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6.10.15.>

	항 목	건당점수	평가단위	평가부서
특별가산점	정부포상(훈·포장, 표창), 외국정부기관, 국제저명기관 및 단체장 수상	10	개별	교무처
	교내 표창	5	개별	
	광역자치단체장, 공공기관 및 학술단체로부터의 수상	5	개별	
	기초자치단체 및 기타	3	개별	
	그 밖에 민간단체장 수상	3	개별	
	발전기금 기부·유치	연봉액의 1%당 2점(상한점수 20점)	개별	기획처
	연구업적 상한점수(110점) 초과분	초과분 매 40점당 5점 (상한점수 20점)	개별	교무처

	항 목	건당점수	평가단위	평가부서
특별 감점	정직(중징계)	-20	개별	교무처
	감봉(경징계)	-15	개별	
	견책(경징계)	-10	개별	
	대학의 장 또는 기구로부터 교수윤리위반 등으로 시정 요구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8	개별	
	대학의 장 또는 기구로부터 교수윤리위반 등으로 권고를 받은 경우	-5	개별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 내용이 확인된 경우	-5	개별	
	무단외부출강, 무단해외출국, 겸직금지위반, 국외여행 허가 기간 초과·허가 조건 위반(결강 발생) 등 복무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한 경우	-5	개별	
	출결 또는 성적 임의 정정, 무단 휴보강 등 발생 시	-5	개별	
	수업시간 임의변경, 수업시간 미준수 등 관련 규정 위반 발생 시	-3	개별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외부강의등의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개별	

제4조(평가항목의 구분 등) ① 각 평가영역별로 부문-항목-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26.10.15.)
② 평가영역별, 항목별 또는 세부항목별로 각각 상한점수를 둔다.
③ 소속 학생이 없는 단위(교양과·자유전공 등)의 교원에 대한 재학생 등록유지율, 신입생 충원율 및 학과 취업률 점수는 항목별로 해당 평가주기 학과 점수 평균의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26.10.15.>

제2장 교육영역

제5조(교육영역의 평가부문) 교육영역은 강의부문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혁신 부문, 학생지도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개정 2026.10.15.)
제6조(강의부문) ① 강의부문은 강의시수, 주당 강의일수, 강의계획서 및 성적, 휴·보강, 강의평가로 평가하며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2>와 같다. (개정 2022.1.1.)

<표 2> 강의부문 (개정 2024.12. 1.),(개정 2026.10.15.)

평가부문	평가항목	산출근거	상한점수	비고
강의	강의시수	책임시수 1학점 초과 시 × 2	10	강의평가는 년간 4회를 실시하여 결과를 합산한다.
		책임시수 1학점 미달 시 × -2	-5	
	주당 강의일수	의무강의편성 일수에 미달일수 × -2	-5	
	강의계획서 및 성적	강의계획서 및 성적평가 기간 내 미입력 과목수 × -2	-5	
	휴보강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휴보강 및 미보강 횟수 × -2	-5	
	강의평가	(4회 취득점수 합산)/10	40	
	성적정정	성적정정기간 이후 성적정정 건수 × -2	-5	

② 주당 강의시수와 강의편성일수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기별 주당 강의시수의 평점은 강의시간표 편성규정 제1조의 <표 1> 책임시수 및 강의편성 일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교무처에 제출된 시간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12.1.)
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강의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평가이후 취득한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3. '교과외 학습' 과 관련된 시간은 강의시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4. 행정보직 이동으로 인하여 해당교수의 책임시수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학기에 한하여 종전의 책임시수를 적용한다.
5. 학과 사정상 부득이 초과허용시수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주당 강의일수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2항 제1호의 책임시수 및 강의편성 일수에 규정된 해당교수의 주당 책임강의일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교무처에 제출된 시간표를 기준한다.

2. 보직교수는 강의일수와 관계없이 평점상한을 부여한다.
④ 강의계획서 및 성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담당 교과목당 1건의 강의계획서를 대학이 지정한 방법과 기한 내에 학교 전산시스템에 게시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4.12. 1.)
2. <삭제 2024.12. 1.>
3. 성적입력에 대한 평가는 담당 교과목당 1건의 성적 산출 결과를 대학이 지정한 방법과 기한 내에 학교 전산시스템에 게시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4.12. 1.)
⑤ 휴·보강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휴강 후 보충강의를 실시했는지의 여부와 공무상 불가피한 휴강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휴·보강계획서는 해당강의 개시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질병 등에 의한 급박한 사정으로 인한 때에는 사후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1.)
3. 휴강은 본인 상병, 본인 및 자녀 결혼, 배우자 출산,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총장이 승인한 대학 행사, 총장이 명한 공식적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출장 등의 경우에 한해 공무상 불가피한 휴강으로 인정하며, 휴강은 보충강의를 해야 한다.
⑥ 강의평가에 대한 점수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기별 점수는 교수 개인별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값[(해당학기 해당교수가 담당한 강좌 전체에 대한 강의평가 점수 총점) ÷ 강의평가에 참여한 학생 수)]를 구한 다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2. 강의평가는 개설된 전과목(교양 및 전공)의 강의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가. 강좌별 수강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강의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모든 강좌에서 평가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한 점수의 60%의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24.12. 1.)
나. <삭제 2024.12. 1.>
다. 현장실습교과목, 개별수강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⑦ 성적정정기간 이후에 성적 정정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제7조(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혁신 부문) 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혁신 부문은 대학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교과목 운영, 교수역량 향상 및 교내 교육프로그램 참여·지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며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3>과 같다.(개정 2026.10.15.)

<표 3>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혁신 부문(개정 2026.10.15.)

평가부문	평가항목	산출근거	상한점수	비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혁신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교과목 수 × 2점	6	
	원격수업 감점	원격수업 운영규정·저작권 관련 규정 위반 건당 -3점 운영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건당 -2점	-8	
	교수역량 향상프로그램 참여 및 교내 교육프로그램 지도	교내프로그램 참여시간당 × 1점, 교수학습연구대회 등 공모전 형식의 프로그램은 참여건당 2점, 교내 교육프로그램 강의·지도 건당 3점	10	

② 해당 부문의 교과목 운영 여부는 시간표와 해당 부서의 현황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동일 교과목의 경우 1개만 인정한다.
③ 원격수업 교과목은 원격수업 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러닝, 플립러닝을 의미하며, 원격교육지원센터에 등록된 교과목에 대하여 과목당 2점을 인정한다.(개정 2026. 10. 15.)
④ 교수역량 향상프로그램 참여는 교내 프로그램(교내 교육연수 포함)에 한하며,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 참여시간 1시간당 1점을 인정하고, 교수학습연구대회 등 공모전 형식의 프로그램인 경우 참여 건당 2점을 인정한다. 교내 교육프로그램의 강의·지도는 건당 3점을 인정한다.(개정 2026. 10. 15.)
⑤ 원격수업 운영규정 또는 저작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건당 3점, 원격수업 운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건당 2점을 감점하며, 감점 한도는 8점으로 한다.<신설 2026.10.15.>

제8조(학생지도부문) ① 학생지도 부문은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교과외 학생지도, 학생성공 지도, 재학생 등록유지율, 신입생 충원율로 평가하며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4>와 같다. (개정 2022.1.1.), (개정 2026.10.15.)

<표 4> 학생지도부문 (개정 2024.12. 1.), (개정 2026.10.15.)

평가부문	평가항목	산출근거						상한점수
학생지도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지도배정인원 면담건수						25
		면담건수	60건 이상	45건 이상	30건 이상	15건 이상	5건 이상	
		평가점수	25	20	15	10	5	
	교과외 학생지도	교내 동아리지도(일반동아리 및 전공동아리) : 5점/1개						10
		학생외부활동지도, 교외 전국규모 각종대회, 발표회, 전시회, 공모전들을 위한 특별지도 : 2점/건당						
	학생성공지도	학사경고·중도탈락 위험학생 멘토링, J-CAP 위험군 관리,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지도, 유학생 담임·멘토 지도, 아카데믹 어드바이저(AA) 담당 학생 지도 : 1점/건당(주관부서 배정 실적)						10
	재학생 등록유지율	정원내(외) 재학생수 ÷ 해당 학년도와 직전 학년도의 정원내(외) 입학생수 합계(3년제 학과는 직전 2개 학년도 포함) × 100, 정원외 학생은 제한 없이 포함 (대학공시제, 교무처 현황 자료 기준; 소속 학생이 없는 단위의 교원은 제4조제3항)						35
		등록유지율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80% 미만	
		평가점수	35	30	25	20	10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입학자수 + 정원외 입학자수(정원내 모집인원의 20% 이내)] ÷ 정원내 모집인원 × 100(학과 단위, 입학처 현황 자료 기준; 소속 학생이 없는 단위의 교원은 제4조제3항)						35
		충원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70% 미만
		평가점수	35	30	25	20	15	10

②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평가는 연간 1회 실시한다.
2. J-CAP 시스템에 입력된 학생지도 실적을 근거로 평가한다.
3. 오프라인 지도와 온라인 지도(SNS, 원격강의 시스템, e-mail,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한 자료 모두를 포함한다.
4.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에서 지도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지도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실적에서 제외한다.
5. 졸업생에 대한 학생지도 및 진로·취업지도 실적도 포함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2.1.1.)

③ 교과외 학생지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동아리, 외부기관·단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각종대회, 발표회, 전시회, 공모전들을 위한 특별지도로 평가한다.
2. 각 학과별로 학과장을 경유한 활동보고서, 성과보고서 등을 학생지원처에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며 전공동아리는 교무처에 제출한 것으로 평가한다.(개정 2026.10.15.)
3. 단독 활동을 기준으로 한 점수이며, 참여자가 복수인 경우 참여자 수로 나누어 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22.1.1.)

④ 재학생 등록유지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6.10.15.)

1. 재학생 등록유지율은 정원내·외 재학생수를 해당 학년도와 그 직전 학년도의 정원내·외 입학생수 합계(3년제 학과는 직전 2개 학년도를 포함한다)로 나눈 비율(%)로 하며, 정원외 학생은 제한 없이 포함한다. 해당 연도 최종 대학공시제 자료 기준으로 교무처의 현황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개정 2026. 10. 15.)
2. 학과별로 평가하여 학과 교수 개인의 평가 점수로 한다.
3. 신설학과 및 학년제 개편학과의 경우에는 편제 완성년도까지 전 소속학과의 재학생 등록유지율 점수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1.1.),(개정 2026.10.15.)

⑤ <삭제 2026.10.15.>

⑥ 신입생 충원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2.1.1.)

1. 신입생 충원율은 정원내 입학자수에 정원외 입학자수(정원내 모집인원의 20% 이내로 한다)를 더한 인원을 정원

내 모집인원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해당 연도 최종 대학공시제 자료를 기준으로 입학처의 현황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개정 2026. 10. 15.)

2. 학과별로 평가하여 학과교수 개인의 평가 점수로 한다.(개정 2026. 10. 15.)

⑦ 학생성공 지도는 학사경고자·중도탈락 위험학생 멘토링, J-CAP 위험군 관리,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지도, 유학생 담임·멘토 지도, 아카데믹 어드바이저(AA) 담당 학생 지도(담임·멘토·AA 지도는 학기별 학생당 2회 이상 상담한 경우 학생당 1건) 등 주관부서가 배정한 지도 실적을 건당 1점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같은 상담 실적은 제2항의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실적과 중복하여 계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10. 15.>

제3장 산학협력영역

제9조(산학협력영역의 평가) ① 산학협력영역은 교수업적평가규정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산학관민연 협력 활동을 산학협력 연구, 산학협력 교육 및 창업, 국고지원사업 연계, 취업, 산업체 및 지역연계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연간 총 120점을 배정한다.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5>와 같다. (개정 2022.1.1.), (개정 2022.2.17.), (개정 2026. 10. 15.)

<표 5> 산학협력영역의 세부 항목 및 점수 (개정 2024.12. 1.), (개정 2026.10.15.)

<table>
<tr><th>평가부분</th><th>평가항목</th><th colspan="10">산출방법</th><th>상한점수</th></tr>
<tr><td rowspan="5">산학협력 연구</td><td rowspan="4">산관학·국비과제 보고서</td><td colspan="10">관학연구보고서 건당 10점</td><td rowspan="4">20</td></tr>
<tr><td colspan="10">산학연구보고서 건당 10점</td></tr>
<tr><td colspan="10">국비사업 계획보고서 작성 기여 건당 5점</td></tr>
<tr><td colspan="10">국비사업 성과보고서 작성 기여 건당 5점</td></tr>
<tr><td>지식재산·기술실적</td><td colspan="10">국제특허 건당 10점
국내특허·신기술(제품)인증 건당 5점
기술이전 100만원당 1점</td><td>10</td></tr>
<tr><td rowspan="4">산학협력 교육 및 창업</td><td>산학교육·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td><td colspan="10">산업체 대상 직무·외국어·문화·서비스 교육 등 운영프로그램 건당 5점
지역사회·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건당 5점</td><td>20</td></tr>
<tr><td>현장실습지도</td><td colspan="10">순회지도 산업체 방문건당 2점</td><td>14</td></tr>
<tr><td>창업교육·지도</td><td colspan="10">창업경진대회 입상지도 건당 5점 / 취·창업동아리 지도교수 활동 건당 5점
교원창업·학교기업 운영 건당 10점</td><td>10</td></tr>
<tr><td>캡스톤·PBL 지도</td><td colspan="10">캡스톤디자인·PBL 교과목 지도교수 학기당 3점
경진대회 입상지도 건당 3점</td><td>9</td></tr>
<tr><td rowspan="4">국고지원사업 연계</td><td>G1
국고지원사업 강의·운영</td><td colspan="10">국고지원사업으로 개설·지원되는 교과목(과목·학기당) 및 비교과·비학위 프로그램(운영 8시간 이상, 건당)의 강의·운영 건당 3점(공동 담당 시 담당 시간 비율로 안분)</td><td>12</td></tr>
<tr><td>G2
국고지원사업 개발</td><td colspan="10">사업비로 개발하여 주관부서 검수를 마친 교육과정(마이크로디그리·트랙, 산학공동설계 교육과정 포함)·프로그램·교육콘텐츠·진단도구·교육모델 및 정규 편성 심의를 통과한 신규 혁신 교과목 개발(강의계획서 및 전용 교재·콘텐츠 검수 완료 건) 건당 책임교원 5점·참여교원 3점. 단, 동일 교과목의 단순 강의·운영 실적(G1)과는 중복 계상하지 아니함</td><td>15</td></tr>
<tr><td>G3
국고지원사업 협력</td><td colspan="10">산업체·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역사회·다른 대학 등 외부 주체와 함께 수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업 과제(지역현안 프로젝트, 자문·멘토링, 고교·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등) 건당 책임교원 5점·참여교원 3점</td><td>15</td></tr>
<tr><td>G4
국고지원사업 운영 책임</td><td colspan="10">총장 승인 사업단 조직도·위촉장에 따른 운영 역할(6개월 이상): 사업단장·부단장 10점, 영역 책임교원(영역 주관 부서장·학과장)·성과관리 TF 위원 5점(6개월 미만 1/2, 보직 점수와 별도 인정)</td><td>20</td></tr>
<tr><td rowspan="3">취업</td><td rowspan="3">학과 취업률(집단)</td><td colspan="10">학과 졸업자 취업률(대학정보공시 기준, 학과 단위; 소속 학생이 없는 단위의 교원은 제4조제3항)</td><td rowspan="3">33</td></tr>
<tr><td>취업률</td><td>85% 이상</td><td>80% 이상</td><td>75% 이상</td><td>70% 이상</td><td>65% 이상</td><td>60% 이상</td><td>55% 이상</td><td>50% 이상</td><td>50% 미만</td></tr>
<tr><td>평가점수</td><td>33</td><td>30</td><td>27</td><td>24</td><td>21</td><td>17</td><td>13</td><td>8</td><td>0</td></tr>
</table>

평가부분	평가항목	산출방법	상한점수
	지도학생 취업률(개인)	취업지도 학생 1인당 4점(소속학과 무관, 지도학생 기준)	20
	학생취업지도	취업 관련 행사·프로그램 운영 건당 3점	15
	지역정주 취업 가산	지도학생이 대학 소재 관내 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2점(취업 주관부서 확인)	10
산업체 및 지역연계	산학협력협약	산학협약 체결 및 관리 신규 업체 당 3점 협약업체 실질운영(공동 프로그램·현장실습·채용 연계·기술지도 등 결과 확인) 건당 2점(상한 6점)	20
	지역연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지역 민간단체 등 지산학관민연 협력 주체와 협약체결 건당 3점 협약에 따른 실질 사업(지역특화 R&D,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리빙랩,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과제 등) 수행·결과보고서 제출 건당 7점	20
계			120

※ 국고지원사업 연계(G1~G4)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 활동을 그 형태에 따라 G1(강의·운영), G2(개발), G3(협력), G4(사업 운영 책임)의 네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며, 하나의 실적은 한 항목에만 계상한다.

② 산학협력영역의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공통으로 적용한다.

1. 점수는 단독 활동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자가 복수인 경우 참여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활동·프로그램 및 지도교수는 주관부서에 신고되고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것만 인정한다.
3. 계약을 수반하는 실적은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되거나 산학협력단장이 포함된 계약만 인정한다.
4. 하나의 실적은 하나의 항목에만 계상하며, 실적의 확인은 주관부서의 대장을 우선으로 한다.
5. 실적은 실질적으로 참여·기여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명의만 등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허위 또는 명의 대여로 확인된 실적은 해당 항목을 0점으로 하고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9조에 따른다.

③ 산학협력 연구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산관학·국비과제 보고서: 정부·공공기관·타 대학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제출한 관학연구보고서(건당 10점),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제출한 산학연구보고서(건당 10점), 국고지원사업 계획보고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기여(각 건당 5점).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에 따라 수행된 개별 제본 최종보고서만 인정하며, 다년 계약에 의한 과제 연구보고서는 최종 보고서만 인정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순용역·서류형식 보고서는 제외한다.
2. 지식재산·기술실적: 장안대학교가 특허권자이고 해당 교원이 발명자로 등록된 국제특허(건당 10점), 국내특허 및 정부·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인증(건당 5점), 대학에 입금된 기술이전 수입(100만원당 1점). 특허는 등록 완료 시점에 평가하고 동일 내용의 국내·국외 특허는 하나만 인정한다.

④ 산학협력 교육 및 창업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산학교육·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와의 협약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일학습병행 등)과 산업체 대상 교육, 지역사회·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취·창업 프로그램의 운영 건당 5점
2. 현장실습지도: 현장견학 인솔 또는 현장실습 순회지도를 위한 산업체 방문 건당 2점(주관부서의 배정 자료로 확인)
3. 창업교육·지도: 창업경진대회 입상 지도 및 취·창업동아리 지도 건당 5점, 교원창업 및 학교기업 운영 건당 10점
4. 캡스톤·PBL 지도: 정규 교과목으로 1학기 이상 팀 과제를 운영한 캡스톤디자인·PBL 교과목의 지도교수 학기당 3점, 관련 경진대회 입상 지도 건당 3점. 캡스톤디자인의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하며 주관부서에서 인정한 실적에 한한다. 단 같은 과제로 두 실적이 중복되는 경우 더 높은 점수의 실적만 인정한다.

⑤ 국고지원사업 연계 부문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의 재정지원사업(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RISE 사업, 앵커사업 등을 말하며, 이하 “국고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활동을 그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실적은 사업 주관부서가 프로그램·과제 단위로 등록·관리하는 대장(참여 교원·역할·결과보고서)으로 확인하며, 하나의 실적은 각 호 중 하나에만 계상하고 다른 평가항목과 중복하여 계상하지 아니한다.

1. G1 강의·운영: 국고지원사업으로 개설·지원되는 교과목과 비교과·비학위 프로그램을 강의·운영한 경우 교과목은 과목·학기당, 프로그램은 운영시간 8시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건당 3점. 공동으로 담당한 경우 담당 시간 비율로 안분한다.

2. G2 개발: 국고지원사업비로 개발하여 주관부서의 검수를 마친 교육과정(마이크로디그리·트랙 및 산학공동설계 교육과정을 포함한다)·프로그램·교육콘텐츠·진단도구·교육모델 등의 결과물과 정규 편성 심의를 통과한 신규 혁신 교과목의 개발(강의계획서와 전용 교재·콘텐츠의 검수를 마친 것에 한한다) 건당 책임교원 5점, 참여교원 3점. 다만, 같은 교과목의 단순 강의·운영 실적(제1호)과는 중복하여 계상하지 아니한다.
3. G3 협력: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역사회, 다른 대학 등 외부 주체와 함께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업 과제 건당 책임교원 5점, 참여교원 3점
4. G4 사업 운영 책임: 총장이 승인한 사업단 조직에 따라 6개월 이상 수행한 운영 역할에 대하여 사업단장 및 부단장 10점, 영역 책임교원(해당 영역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 및 성과관리 TF 위원 5점. 6개월 미만은 2분의 1을 인정하며, 이 점수는 <표 7>의 보직 점수와 별도로 인정한다.
5. 제2호 및 제3호의 책임교원은 프로그램·과제당 1명으로 하고 참여교원은 결과보고서에 역할이 명시된 교원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수로 나누지 아니한다.

⑥ 취업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학과 취업률(집단): 대학정보공시 기준 학과 취업률에 따라 <표 5>의 구간별 점수를 학과 교수 개인의 점수로 한다. 신설학과는 최초 졸업생 발생년도까지 전 소속학과의 점수를 반영하며, 해외취업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1인 창(사)업자·프리랜서·농림어업종사자는 학과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주관부서의 현황자료에 따라 반영한다.
2. 지도학생 취업률(개인): 교수의 취업지도로 취업하여 당해 연도 대학정보공시 취업률에 포함된 지도학생 1인당 4점(지도학생의 소속학과와 무관)
3. 학생취업지도: 취업 관련 행사·프로그램 운영 건당 3점
4. 지역정주 취업 가산: 지도학생이 대학 소재 관내 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2점 (취업 주관부서 확인)

⑦ 산업체 및 지역연계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산학협력협약: 산업체와 신규로 체결한 협약 업체당 3점, 기존 또는 신규 협약업체와의 공동 프로그램·현장실습·채용 연계·기술지도 등 실질 운영 실적 건당 2점(상한 6점). 협약업체와의 교류 실적은 주관부서가 관리한다.
2. 지역연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지역 민간단체 등 지산학관민연 협력 주체와의 협약 체결 건당 3점, 협약에 따른 실질 사업(지역특화 R&D,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리빙랩,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과제 등) 수행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건당 7점

⑧ 주관부서는 제5항의 국고지원사업 연계 활동과 제8조 제7항의 지도 배정 등 참여 기회의 배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매 참여자 모집 또는 배정 시 참여 기회를 공개 모집·배정하되 소속 학생이 없는 단위(교양과·자유전공 등)의 교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때에는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영역

제10조(연구영역의 평가) ① 연구영역은 논문 및 저서·창작 및 실기 등으로 평가하며 연간 총 110점을 배정한다. 그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6>과 같다. (개정 2022.1.1.), (개정 2024.12. 1.)

<표 6> 연구영역 및 창작활동의 세부 항목 및 점수 (개정 2024.12.1.), (개정 2026.10.15.)

항목	세 부 항 목	평가단위	기준점수
논문	SCI(E)·SSCI·A&HCI·Scopus 등재 학술지	편당	200
	한국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편당	150
	한국 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	편당	120
	일반 학술지	편당	70
	석사학위논문	편당	100
	박사학위논문	편당	200
저서	학술저서	권	100
	전공관련 번역서	권	80
	편저서	권	50

항목	세 부 항 목		평가단위	기준점수
	교과서		권	50
	저서 개정판		권	50
멀티미디어 교재개발	멀티미디어 교재/문제집 CD로 작성된 저서		권	80
학술발표	국제 학술대회 초청강연		회당	150
	국제 학술대회 논문발표(Full Text) 초록 및 구두발표		편당	50 20
	국내 전국규모 학술대회 초청강연		회당	100
	국내 전국규모 학술대회 논문발표(Full Text) 초록 및 구두발표		편당	20 10
문학	창작단행본, 작품집(신작30%이상)		권	100
	시, 동화, 수필, 평론		편	20
	소설, 장편동화, 시나리오, 희곡(원고지200매이상)			80
미술·디자인·음악·영상 물제작	개인전	국제	회당	150
		국내	회당	100
	단체전	국제	회당	60
		국내	회당	40
	공모전 (대한민국 미술대전,대한민국 산업디자인 대전, 대한민국패션대전 등)	대상	회당	150
		특선	회당	100
		입선	회당	50
	<신설>음반 출간	개인 음반 출간	건당	50
		2인 이상 공동 음반 출간	건당	25
	<신설>작곡	개인 작곡 발표회	건당	100
		2인 이상 작곡 발표회	건당	50
		합창곡 발표, 독주곡 발표, 영상음악·레코딩, 컴퓨터음악, 멀티미디어음악	건당	50
	<신설>공인된 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및 음악제의 연출, 기획, 감독 또는 1/2이상 작곡, 편곡, 반주, 지휘	국제	회당	100
		국내	회당	50
체육	공인된 체육단체에서의 개인 연구 발표회	국제	회당	150
		국내	회당	100
	각종 경기의 심판	국제공인경기심판	회당	100
		전국규모 국내 공인 경기심판	회당	50
	국제공인 심판자격 획득		건당	50

※ 국제학술지는 SCI(E)·SSCI·A&HCI·Scopus 등재지에 한하며,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하지 않는 유형(약탈적 학술지 등)은 제외한다.

② 연구영역의 취득 실적점수가 상한점수(110점)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제23조 제5항에 따라 특별가산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26.10.15.>

제11조(연구영역 평가기준 및 방법) ① 연구업적은 교원 개개인의 최초 임용 시의 전공 또는 담당전공교과목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연구실적만 인정한다.

② 저서를 제외한 연구업적물에 장안대학교 소속임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기관으로 명시된 경우는 업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대학교에 임용되기 전에 투고하고, 임용 후 출판한 업적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문학·예체능 영역의 업적은 저서 또는 논문실적으로 인정한다.

④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2조(실적물의 인정 환산율) 공동업적에 따른 참여자별 점수의 배분은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 30%, 5인 이상은 1/n(저자수)로 환산하여 인정하며 음반 출간과 작곡 항목은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1.1.), (개정 2024.12. 1.)

제13조(논문) ① 논문은 게재된 학술지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② 논문은 해당교수의 임용기간 또는 승진기간 내에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장안대학교 소속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③ 회갑논문집, 기념논문집 등 부정기적인 논문집 수록논문과 토론집, 학술지에 게재된 기술논단 등 연구논문이 아닌 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동일한 논문의 중복 게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⑤ 석·박사학위 논문은 1회에 한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전공전환을 하여 새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해외학위의 경우에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저서) 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에게 공개된 출판저작물[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있는 서적, CD 등을 말함]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전공과 관련된 강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는 실적만 인정한다. (개정 2020.3.1.)

② 동일제목의 저서는 배출권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저작물로 간주한다. (개정 2020.3.1.)

③ 본문의 내용이 200페이지 이상일 경우에만 저서로 인정하고, 150페이지 이상 200페이지 미만은 70%로 인정한다. (개정 2020.3.1.)

④ 전공과 관련 없는 수상록, 회고록, 이미 논문으로 평가받은 논문 등의 모음집 형태의 단행본과 논설·시사컬럼 모음집, 그 밖에 서적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⑤ 개정판의 경우 본문 내용의 개정정도가 3분의 1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5조(학술발표) ① 학술발표는 4인 이상의 논문발표자가 참여한 정식 학술대회에서의 논문발표 및 주제강연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워크샵(집담회), 간담회, 공청회 및 연구회의 소단위 활동 등은 제외한다. 다만, 정식학술대회 성격의 워크샵·세미나의 논문발표는 학술발표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국내·외 학회나 단체에서 주최한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임용 기간 또는 승진기간 내에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장안대학교 소속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6조(문학) ① 문학작품은 문학과 관련된 전공교수에 한하여 업적으로 인정한다.

② 이전에 업적으로 인정받은 공연작품을 문학작품으로 출간하거나, 이전에 인정받은 문학작품을 공연한 경우 공연작품과 출판작품을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③ 동일한 작품을 다른 공연(전시회, 발표회 등)에서 재발표한 경우에도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제17조(미술·디자인·음악·영상물제작 분야) ① 개인 전시·발표·음악회·영상물제작 등의 창작업적은 30% 이상의 신작으로 구성되어야만 업적으로 인정한다.

② 동일한 전시·발표·음악회·영상물제작 등에서 발표한 하나의 작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평점인 한 가지 역할만 인정한다.

③ 대중음악공연, 예술음악공연의 경우 유료로 티켓을 판매하는 예술공연에 한하여 반영한다. 단, 음반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음반 출간자로 장안대학교 문구가 들어간 경우에 한하여 100%의 점수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0%의 점수만 인정한다. <신설 2024.12. 1.>

1. 국제음반 제작물은 외국 음반 제작사 레이블의 음반으로 상업적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국내음반 제작물은 음반협회나 영상협회 등록 음반사에서 제작한 음반으로 상업적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디지털 음반의 경우 음원 유통계약서 및 온라인 유료 음악사이트에 유통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8조(체육분야) 체육분야는 개인 발표회 및 각종 경기의 심판 등의 업적에 대해 평가한다.

제5장 봉사 영역

제19조(봉사영역의 평가부문) ① 봉사영역은 교내봉사, 교외봉사, 학사참여도로 구분하며 총 100점을 배정한다.

② 봉사영역이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7>과 같으며 각 항목별 상한점수를 둔다.

③ 봉사영역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 단독 활동을 기준으로 한 점수이며, 참여자가 복수인 경우 참여자 수로 나누어 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22.1.1.)

<표 7> 봉사영역 (개정 2023.5.30), (개정 2024.12. 1.), (개정 2026.10.15.)

구분	평가항목	상한점수	평가단위	기준점수
교내봉사	처장	50	개월	
	본부장, 부처장, 원장, 부원장, 관장, 센터장 등	40	개월	
	학과장. 학부장	30	개월	
	교내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국고지원사업 관련 위원회 포함)	10	건당	3
	대학발전 각종 프로젝트 참여(국고지원사업 TF 참여 포함)	10	건당	10
	산학협력단(처) 사업제안서 참여	10	건당	10
	진로진학을 위한 고교 및 학원 방문	30	방문처당	3
	입시설명회 및 진로박람회 유치 또는 운영 참여	20	회	6
	학사학위 과정,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유치 실적	20	1인당	2
	학보 및 교지기고	10	1회당	3
	교육기부	10	1회당	2
	예비대학운영	10	1학기당	5
	시간제 등록생 유치	10	1명당	2
	학점은행제교과운영	10	교과목당	10
	성인학습학과 개설 및 운영	10	1개 학과당	10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1개당	5
	학사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 채택	10	1회당	5
	국제교류 및 해외대학 협정체결	10	건당	5
	외국인 유학생 별도반 운영(수업 담당 교원·운영 학과장)	20	반당	10
	성인학습자 별도반·산업체 위탁과정 운영 – 토요일 대면수업 포함(수업 담당 교원·운영 학과장)	20	반당	10
	성인학습자 별도반·산업체 위탁과정 운영 – 온라인(수업 담당 교원)		반당	5
	자유학기제 참여	10	건당	2
	<제23조(특별가산점)으로 이동>			
교외봉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회 임원	10	1개월당	1
	국내외 학술회의 좌장 및 패널, 사회자	10	회당	1
	국내외 사회봉사활동	10	1일 8시간기준	2
	언론매체 기고, 방송매체 출연 등	10	회당	2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공공단체의 위원회 위원	10	1개월당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공공단체, 학술단체의 연구, 심사, 평가단, 출제, 채점, 심사위원	10	회당	2
학사참여도	대학행사 (20점) / 전체교수회의, 교수연수, 워크샵, 특강 등	20		20-(불참횟수×2)
	학과행사 (10점) / 졸업식, 입학식, 과제전, 졸업전, MT, 축제, 체육대회, 신입생O.T, 학과회의 등	10		10-(불참횟수×2)

제20조(교내봉사) ① 행정보직을 수행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내봉사 점수를 부여하되, 재직 개월수별로 계산하여 배점한다.

② 교내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는 위원회 위촉현황을 주관부서에서 확인된 실적을 인정하며, 국고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운영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실무위원회 등)의 위원 참여를 포함한다. (개정 2022.1.1.),(개정 2026.10.15.)

③ <삭제 2022. 10. 7.>

④ 대학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는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부여된 특별 임무, 과제 또는 TF팀 참여에 대해 무보수로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22.1.1.), (개정 2024.12. 1.)

⑤ 산학협력단(처) 사업제안서 참여는 산학협력단(처)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제안서 작성에 참여하여 채택된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22.1.1.)
⑥ 입학홍보활동은 학과 및 대학의 홍보로 신입생 유치와 관련된 진로 진학을 위한 고교 및 학원을 방문한 활동과 입시설명회 및 진로박람회를 유치 또는 운영에 참여한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주관부서에서 확인된 실적을 인정한다. (개정 2024.12. 1.), (개정 2026.10.15.)
⑦ 학사학위 과정,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유치 실적은 등록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과 및 주관부서에서 확인된 실적을 인정한다.
⑧ 학보 및 교지에 투고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⑨ 교육기부활동은 대학에서 주관하는 교육기부사업에 참여하여 주관부서에서 확인한 실적과 교원의 전공을 활용하여 대학의 교육운영 프로그램에 무보수로 참여하고 주관부서에서 확인한 실적에 대해 인정한다.
⑩ 예비대학 운영은 대학에서 주관하는 예비대학 운영사업이나 경기도교육청 주관 꿈의 대학 운영 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을 인정한다.
⑪ 시간제 등록생 유치는 등록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과 및 주관부서에서 확인된 실적을 인정한다.
⑫ 학점은행제교과운영, 성인학습학과 개설 및 운영,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것에 한한다.
⑬ 학사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 채택은 대학의 학사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후 실제 운영된 실적에 한한다. (개정 2022.1.1.)
⑭ 국제교류 및 해외대학 협정체결은 외국대학과 학점교류, 공동 교육과정 운영,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4.12. 1.)
⑮ 별도과정 운영 실적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의 교원 중 해당 과정의 수업을 담당한 교원에게 인정하고, 운영 학과의 학과장에게는 수업 담당 여부와 관계없이 과정당 10점을 인정하되 수업 담당 점수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각 호의 상한점수는 20점으로 한다. <신설 2024.12. 1.>, (개정 2026. 10. 15.)
1. 외국인 유학생 별도반(반당 15명 이상): 반당 10점
2. 성인학습자 별도반 및 산업체 위탁과정(반당 10명 이상): 토요일 대면수업을 포함하여 운영한 경우 반당 10점, 온라인으로 운영한 경우 반당 5점

⑯ 자유학기제 참여는 대학에서 주관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인정한다.
⑰ <제23조(특별가산점)③항으로 이동> (개정 2023. 5. 30.)

제21조(교외봉사)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회의 임원으로 1개월 이상 활동한 실적을 인정하며, 위촉기간을 확인하여 배점한다.
② 학술회의 및 좌장, 패널, 발표자, 사회자 등으로 참가한 실적을 인정한다. (개정 2022.1.1.)
③ 국내외 사회봉사 활동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인된 기관의 봉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언론매체 기고는 중앙 및 지방의 일간지투고, 국내외의 주요 정기간행물게재, 학술지 논평 및 서평 게재, 방송매체 출연 등의 활동을 평가하며, 매체에 소속 기관명이 노출되어야 하고 학과 홍보성 기사 제공 등은 제외 한다.
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공공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1개월 이상 활동한 실적을 인정하며, 위촉기간을 확인하여 배점한다. (개정 2022.1.1.)
⑥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공공단체, 학술단체의 연구, 심사, 평가단, 출제, 채점, 심사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22.1.1.)

제22조(학사참여도) ① 대학의 정책 및 방침에 대한 참여도 제고 및 정보공유의 확대를 목적으로 학사참여도를 평가에 반영하며 학사 참여도의 상한점수는 대학행사 20점, 학과 행사 10점으로 한다.
② 대학행사 참여도는 대학 차원에서 진행되는 각종행사의 참석여부로 평가한다.
③ 학과행사 참여도는 학과 차원에서 진행되는 각종행사의 참석여부로 평가한다.
④ 수업 및 공식적 업무와 관련된 출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참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3조(특별가산점) ① 특별가산점은 훈·포장, 교내표창,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등의 표창·상장 등 수상실적, 발전기금 기부·유치 실적 및 연구영역 상한점수 초과 실적을 인정한다. (개정 2023. 5. 30.), (개정 2026.10.15.)
② 수상실적에서 공로상, 감사장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 5. 30.)
<제20조(교내봉사)⑯항이동> ③ 발전기금은 교육, 연구, 장학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본 대학교에 기부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및 재산가치가 있는 물품 등의 기부금품과 적립금을 말하며, 직접 기부하거나 산업체나 개인 등의 외부 기부를 유치하여 관련부서에서 확인된 실적에 대해 평가부서에서 연봉액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

되, 공동유치의 경우 참여자 수로 나누어 점수를 산정한다. 세부 사항은 대학발전기금조성 및 관리규정, 대학발전기금조성 및 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5. 30.)
④ 특별가산점의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8>과 같다. (개정 2023. 5. 30.)
⑤ 연구영역의 취득 실적점수가 상한점수(110점)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매 40점당 5점을 가산하며, 가산점의 상한은 20점으로 한다. <신설 2026.10.15.>

<표 8> 특별가산점 (개정 2023. 5. 30.), (개정 2024.12. 1.), (개정 2026.10.15.)

항목	평가항목	평가단위	건당점수
특별가산점	정부포상(훈·포장, 표창), 외국정부기관, 국제저명기관 및 단체장 수상	건당	10
	교내 표창	건당	5
	광역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및 대학총장 수상	건당	5
	학술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수상	건당	3
	그 밖에 민간단체장 수상	건당	3
	발전기금 기부·유치	연봉액의 1%당	2(상한점수 20점)
	연구업적 상한점수(110점) 초과분	초과분 매 40점당	5 (상한점수 20점)

제24조(특별감점) ① 특별감점은 교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교원의 복무위반 등 인사 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② 특별감점의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9>와 같다.
③ 특별감점 사유가 발생된 경우 교원 인사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④ 징계의 내용과 아래 평가 항목의 내용이 중복될 경우 감점 점수가 큰 점수를 반영한다.
⑤ 학기 중(학사일정상 개강일부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사적 국외여행은 교원 복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업 및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학기당 누계 15일(주말·공휴일을 포함한다)·2회 이내로 한다. 결강이 발생하여 보강이 필요한 여행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10.15.>
⑥ 국제학술대회 참가, 공동연구, 산학협력 등 공무 목적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은 국외여행은 공무 국외여행으로 분류하여 제5항의 누계 일수·횟수와 <표 9>의 감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 10. 15.>

<표 9> 특별감점 (개정 2024.12. 1.), (개정 2026.10.15.)

항목	평가항목	평가단위	건당점수
특별감점	정직(중징계)	1회당	-20
	감봉(경징계)	1회당	-15
	견책(경징계)	1회당	-10
	대학의 장 또는 기구로부터 교수윤리위반 등으로 시정 요구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1회당	-8
	대학의 장 또는 기구로부터 교수윤리위반 등으로 권고를 받은 경우	1회당	-5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 내용이 확인된 경우	1회당	-5
	무단외부출강, 무단해외출국, 겸직금지위반, 국외여행 허가 기간 초과·허가 조건 위반(결강 발생) 등 복무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한 경우	1회당	-5
	출결 또는 성적 임의 정정, 무단 휴보강 등 발생 시	1회당	-5
	수업시간 임의변경, 수업시간 미준수 등 관련 규정 위반 발생 시	1회당	-3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외부강의등의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1회당	-3

제6장 평가결과 및 활용

제25조(교원승진적용) 본 교수업적 평가 결과를 승진 및 재임용의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정년보장적용) 본 교수업적 평가 결과를 정년보장 및 정년트랙으로 변경의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우수교원포상) 본 교수업적 평가 결과를 우수교원 포상 및 혜택 부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8조(기타) 이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평가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4조는 업적평가 누락을 방지하고 평가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발생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②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라도 사안이 진행 중인 경우 최종결과를 발표한 해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부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교무처, 학생지원처의 소관 사무는 직제규정, 사무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한여 산학협력처에서 승계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교무처, 학생지원처의 근무자는 별도 인사 명령시까지 산학협력처 소속 근무자로 본다.
제3조(종전의 사무행정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교무처, 학생지원처에서 시행된 문서 및 사무행정행위는 해당 사무를 승계한 산학협력처에서 시행된 사무행정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이 규정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 제1항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승계 이전에 소관 부서, 소관 부서장, 소관 부서직원이 소관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승계 이후 부서의 부서장 또는 그 소속 직원이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단, 2022학년도 교수업적평가는 종전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이 시행일인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은 2023학년도 교수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단, 2022학년도 교수업적평가는 시행일이 2022년 1월 1일 이전의 종전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시행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은 2023학년도 교수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단, 2023학년도 교수업적평가는 시행일이 2022년 10월 15일 이전의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시행일이 2023년 10월 16일 이후인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은 2024학년도 교수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단, 2025년도 교수업적평가는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 이전의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시행규칙의 개정 규정은 2027학년도 평가주기(2026년 10월 16일부터 2027년 10월 15일까지의 실적)부터 적용한다.